

1.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도심항공교통의 도입·확산, 활용·촉진 및 지원을 위해 「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9768호, 23. 10. 24. 공포, 24. 4. 25. 시행) 및 하위법령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, 원활한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·인력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지정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의 세부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심항공교통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규 제정(안)

국토교통부고시 제 호

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에 관한 기준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,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세부기준) 「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7조 별표 2에 따른 장비·인력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3조(사업계획서 작성 세부기준) 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실증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실증하고자 하는 대상 시나리오 및 세부 수행절차
2. 실증 인력현황 및 업무분장
3. 실증 장비현황 및 관리계획

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다목의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전파·기상 여건 변화 등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분석
2. 위험요소 분석에 따른 대응방안

③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“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
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
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실증하고자하는 실증사업구역
2. 유지관리계획

제4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
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
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
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장비·인력 세부기준(제2조 관련)

실증 사업 분야	지정기준	
도심형 항공기 운항	장비기준	1. 영 별표 2 제1호가목에서 “도심형항공기 등 도심형항공기 운항 분야의 실증을 위한 장비”란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말한다. 가. 도심형항공기 나. 운항 실증장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 1) 데이터링크 통신(5G 등) 기능이 갖추어진 운항관리시스템 2) 기상자료 수집 및 전파 시스템 3) 운항관리시스템 서버 및 단말기 4) 운항관리시스템 운용 모니터 5) 교통관리 및 버티포트 운영·관리 등과 연계된 정보공유시스템
	인력기준	1. 영 별표 2 제1호나목1)에서 “확보한 도심형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조종사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 다. 가. 도심형항공기 제작국가의 조종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해당 도심형항공기 제작사의 조종 교육을 받고 해당 도심형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할 수 있는 사람 나. 해당 도심형항공기 제작사의 조종 교육을 받아 해당 도심형항 공기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 2. 영 별표 2 제1호나목2)에서 “확보한 도심형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사”란 해당 도심형항공기 제작사의 정비 교육을 받은 사 람을 말한다.
도심 항공 교통 관리	장비기준	1. 영 별표 2 제2호가목에서 “도심항공교통 관리를 위한 전산장비, 통신장비, 관제장비 등의 장비”란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말한다. 가. 전산장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 1) 기상자료 수집 및 전파 시스템 2) 교통관리시스템 서버 및 단말기 3) 교통관리시스템 운용 모니터 나. 통신장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 1) 단거리이동통신시설(VHF) 2) 자동종속감시시설(ADS-B 등) 수신기 3) 위성항법감시시설(GNSS) 수신기 4) 데이터링크 통신장비(5G 등)

		<p>다. 관제장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데이터링크 통신(5G 등) 기능이 갖추어진 교통관리시스템 2) 운항 또는 버티포트 운영·관리 등과 연계된 정보공유시스템
	인력기준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항공안전법」 제35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2. 「항공안전법 시행규칙」 제75조 및 별표4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
버티포트 운영·관리	장비기준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영 별표 2 제3호가목에서 “버티포트의 안정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한 전산장비, 통신장비 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말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전산장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기상자료 수집 및 전파 장비 2) 버티포트 운영·관리 서버 및 단말기 3) 버티포트 운영·관리 운용 모니터 4) 데이터링크 통신(5G 등) 기능이 갖추어진 버티포트 운영·관리 장비 5) 운항·교통관리 등과 연계된 정보공유시스템 6) 보안검색 장비 나. 통신장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단거리이동통신시설(VHF 등) 2) 자동중속감시시설(ADS-B) 수신기 3) 위성항법감시시설(GNSS) 수신기 4) 데이터링크 통신(5G 등)
	인력기준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영 별표 2 제3호나목1)에서 “버티포트 보안검색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「항공보안법」 제2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나. 「항공보안법」 제28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교관 자격을 보유한 사람 2. 영 별표 2 제3호나목2)에서 “버티포트 운영·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「공항시설법」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·운용 및 사용기준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관리·운용하는 사람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나. 「공항시설법」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·운용 및 사용기준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관리·운용하는 사람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의 교관자격을 보유한 사람

비고

1. 각 실증사업 분야의 장비기준은 장비의 구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

- 이나 그 밖에 장비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비 명세서 등을 해당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.
2. 각 실증사업 분야의 인력기준은 자격증, 졸업증명서, 경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.
 3. 실증사업 시행 전까지의 장비 또는 인력 확보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확보계획을 전제로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.